보도시점 2026.11.3.(화) 국무회의 종료 시 배포 2026.11.3.(화) 09:00

‘국민 생명·안전’은 한층 두텁게 보호, ‘철 지난 규제’는 보다 과감히 개선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심사’ 도입으로 국민안전 공백 최소화

▶ ‘사후규제영향평가’ 법제화로 도입된 규제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개선

▶ ‘신산업 분야 전략적 규제 정비’를 통한 글로벌 수준 규제입증 책임제 실시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정부는 11월 3일(화) 제47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의 구체화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

□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은 ❶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규합위”)의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 ❷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여 규합위를 중심으로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❸규합위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한 경우 규제의 소관 부처에서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❶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심사 범위 : '사람 살리는 정부' 뒷받침 》

□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경우에만 규제영향분석 실시 의무와 규합위의 규제심사 절차가 적용되었으나,

○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이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와 절차가 적용된다.

□ 이에,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폐지·완화 시 규합위의 심사 대상이 되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다.

▶ 폐지·완화 추진 시 규제심사 대상 '생명 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

❶ 건축물、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등 건축물、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❷ 교통수단의 구조、장치、운행 등에 관한 기준 등 교통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❸ 산업재해의 예방 조치 및 산업현장의 시설、설비 등에 관한 기준 등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❹ 각종 제품의 위해성 판단 기준 및 안전 기준 등 생활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❺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에 관한 기준 등 식품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❻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기준 및 의료기기、의약품의 제조、유통、사용 등에 관한 기준 등 보건、의료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제에 준하는 규제로서 위원회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규제

○ 아울러,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불충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등은 '중요 규제'로 분류되어 규합위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치게 된다.

《 ❷ 사후규제영향평가 실시 절차 : 증거기반 규제품질 관리체계 확립 》

□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정의*와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이미 도입된 규제 중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인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규제 등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하였다.

* 기존 규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개정법 제2조제1항제6호)

○ 이는 '23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온 평가체계를 법제화하여, 규합위를 중심으로 증거기반 규제품질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함이다.

□ 개정「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사후규제영향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을 ❶규제의 집행 현황 및 문제점 ❷규제 목적의 달성도 및 수단의 적합성 ❸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 내실있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위해, 평가를 수행한 소관 부처 등에게 규합위가 평가결과의 보완 또는 설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❸ 신산업 분야 전략적 규제정비 : 글로벌 수준에 입각한 규제 재설계 》

□ 개정「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규합위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명토록 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심사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이는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 속도가 빠르고 여러 부처의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규제개선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도입되었다.

□ 개정「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전략적 규제정비의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❹ 규제 개선 우수 공무원 우대조치 강화 : 공직사회 규제 합리화 분위기 확산 》

□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규제 개선 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가 강화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 성과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업무실적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서 상위 5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으로 확대되었다.

○ 이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규제 합리화 분위기가 확산·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 합리화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은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존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 “앞으로도, 풀어야 할 규제는 풀되 지켜야 할 규제는 지키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규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규정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방준희 (044-200-2432)
		담당자	사무관	이의종 (044-200-2429)
<공동>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김일석 (044-200-2412)
		담당자	사무관	정용균 (044-200-2913)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책임자	과 장	박유리 (044-200-2911)
		담당자	주무관	김영길 (044-200-244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간 ----------.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의2(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1. 법 제7조제3항(법 제7조의2제2

대상·범위·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 법 제7조제3항(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에는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말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② ----------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법 제7조제2항(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완된 경우에는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말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란 다음 각 호의 규제(이

	하 “생명·안전 관련 규제”라 한다)를 말한다. 1. 건축물·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등 건축물·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2. 교통수단의 구조·장치·운행 등에 관한 기준 등 교통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3. 산업재해의 예방 조치 및 산업현장의 시설·설비 등에 관한 기준 등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4. 각종 제품의 위해성 판단 기준 및 안전 기준 등 생활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5.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에 관한 기준 등 식품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기준 및 의료기기·의약품의 제조·유통·사용 등에 관한 기준 등 보건·의료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제에 준하는 규제로서 위원회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

	고·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규제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7조의3(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① ----------.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	1. ----- 정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해당 규제의 정비계획(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 정비계획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 ------ 법 제9조(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제로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1.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해당하는 규제 가.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나.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다.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라.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마.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바.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사.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아.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2.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 가. 제1호나목, 마목, 바목 및 아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 나.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불충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다. 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개선권고 등)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 각 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사후규제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의 선

	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의 집행 현황 및 문제점 2. 규제 목적의 달성도 및 수단의 적합성 3. 정책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4. 그 밖에 위원회가 사후규제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전문연구기관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보완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9(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 중에서 그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1.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2. 법 제20조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 3. 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선정된 규제정비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90일 이내의 소명 기간을 정

	해야 한다.
제32조(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32조(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국무조정실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33조(인사상 우대 등) ① (생 략)	제33조(인사상 우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조치.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성과가산	5. ---------- ----------. ------ ---------- ---------- ---------- ------ 5퍼센트 ---------- ----------

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6. ~ 8. (생 략) ③ ~ 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6.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